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63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 : 김 윤 · 조계원 · 이재강

윤종오 • 이수진 • 박지원

한준호 · 서미화 · 강선우

정혜경 · 장종태 · 전종덕

정진욱 · 송재봉 · 남인순

박희승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최고수준으로, 노후소득보장의 밑바탕이 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'국민'연금이라는 제도명이 무색하게, 가입대상인 18~59세 총인구 3,010만명 중 1,034만명이 납부예외, 적용제외,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 연금 납입을 지속하지 못하는 '가입 사각지대'에 놓여 있음.

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함. 또한,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 치 못하여 노령연금 수령자의 30.5%가 월 3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을 받는 '수급 사각지대'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

출산크레딧, 실업크레딧,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(안 제3 조의3 신설 및 제4조제2항).
- 나.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, 산입 기간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대체복무도 크레딧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확대함(안 제18조).
- 다. 출산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첫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24개월 로 하고,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(안 제19조).
- 라.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, 전액을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도록 함(안 제19조의2).
- 마.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하도록 하며, 그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로 확대함(안 제100조의4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3(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 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납 부예외자, 적용제외자, 장기체납자, 저연금자, 무연금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, 그 밖의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"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"을 "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로부터 도출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담은 국민 연금기금의 운용 계획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

- 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6개월"을 "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.
- 5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 이상의 자녀가"를 "자녀가"로, "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기간을"을 "자녀를 얻은 때에는 자녀 1명당 24개월을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존 제3항 중 "전부 또는 일부를"을 "전부를"로 한다.
 -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1년을"을 "2년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"을 "인정소득 의 하한선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

가가 전부를 부담한다.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를 일반회계 및 「고용보험법」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제51조제1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제19조"를 "제18조 및 제19조"로 한다.

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"를 "지역가입자로서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12개월을"을 "36개월을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있지 아니할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- 제3조(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대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예외 자, 적용제외자, 장기체납자, 저 연금자, 무연금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	현 행	개 정 안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, 그 밖의 관계 기관·법인 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		제3조의3(국민연금 사각지대 실 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예외 자, 적용제외자, 장기체납자, 저 연금자, 무연금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 지사, 그 밖의 관계 기관・법인 ・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 기재정균형 유지) ① (생 략)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 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 하고,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 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 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다 만,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 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로 정한다.
세4조(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
기재정균형 유지) ① (현행과
같음)
②
제3조의
3에 따른 실태조사로부터 도출
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
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의
<u> 운용 계획</u>
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③ (생략)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6개월을 가입기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 <후단 신설> 다만, 「병역법」에 따 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제19조(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| 제19조(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) ① 다음 각 기간 추가 산입) ① ------

> --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---

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 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 로 한다. <단서 삭제>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7 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가 산입) ① 2 이상의 자녀가 가 산입) ① 자녀가-----

를 얻은 때에는 자녀 1명당 24 개월을-----

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-----.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

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방법 등에 함한다)에는 다음 각 호에 따 은 대통령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서 삭제> 산입한다. <후단 신설> 다만,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자녀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자녀가 2명인 경우 : 12개월

 2.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:

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

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

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

 개월 수
- ② (생 략)
-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<u>전부 또는 일부를</u> 부담한다.
- 제19조의2(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「고 용보험법」 제37조제1항에 따 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

 방법
 등에
 관하여
 필요한
 사항

 은
 대통령령으로
 정한다.
 <단</td>

 서
 삭제>

<<u>삭 제></u> <삭 제>

(2) (연앵과 살음)
③
<u>전부를</u>
제19조의2(실업에 대한 가입기간
추가 산입) ①

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 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 다만, 추가로 산입하 는 기간은 <u>1년을</u> 초과할 수 없 다.

- 1. 2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「고용보험법」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(이하의 조에서 "인정소득"이라 한다)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. 다만,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, 제101조에 따른

국민연금기금 및 「고용보험 법」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51조(기본연금액) ① 수급권자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(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)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.

- 1. (생략)
- 2.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. 다만,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51조(기본연금액) ①
1. (현행과 같음) 2
<i></i>
<u>,</u>

가. (생략)

- 나.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
- 다.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

②·③ (생 략)

- 제100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 저 연금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 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.
 - 것. 다만,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2. (생략)

가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다.	제	18조	및	제19	<u>조</u>	
-						
-						
-						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세100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
연금보험료의 지원) ①
<u>지역가입자로서</u>
<u>3</u> 6개월을

- 1.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1.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있지 아니할 것 <단서 삭제>
 - 2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